모의고사 제19회차 관세평가 [문제 4] 물음 2.
답안수정내용

[문제 4] 물음 2.(Case 1)의 거래단계 및 수량차이에 대한 조정여부 및 과세가격 산출(6점)

<수정전>

2.2 평가판단 및 과세가격 산출

• <Case 1>의 경우, 유사물품의 판매자 G는 2,000개이상 판매하는 경우 **수량할인을 적용**하고 있고 제시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2,000개이상 구매하는 경우의 가격이므로, **평가대상물품의 거래수량인 1,700개와의 차이를 조정**하면 **유사물품의 수량할인 전(前) 거래가격**인 **개당 5.5c.u(CIF)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**할 수 있을 것이다. 다만, 유사물품의 경우 거래단계에 따른 가격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차이조정은 불필요하다. 따라서 <Case 1>의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**5.5c.u × 1,700개 = 9,350c.u**가 된다.

<수정 후>

2.2 평가판단 및 과세가격 산출

• <Case 1>의 경우, 유사물품의 판매자 G는 2,000개이상 판매하는 경우 **수량할인을 적용**하고 있고 제시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1,700개를 구매하는 경우의 가격이므로, **평가대상물품의 거래수량인 2000개와의 차이를 조정**하면 **유사물품의 수량할인 후(後) 거래가격**인 **개당 5.5c.u(CIF)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**할 수 있을 것이다. 다만, 유사물품의 경우 거래단계에 따른 가격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차이조정은 불필요하다. 따라서 <Case 1>의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**5.5c.u × 2,000개 = 11,000.c.u가 된다.**